

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

의 안	
번 호	6-224

제출년월일 : 2012. 10. .

제 출 자 : 동 두 천 시 장

□ 개정이유

-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, 지금까지는 수동인증기를 사용하였으나 이를 표준지방세 정보 시스템에 사전에 등록된 전자수입증지로 자동 인쇄되어 출력 발급함으로써 민원 편의 및 수수료 징수 등 업무효율성 제고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서 사전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증지가 자동 인쇄되어 출력 발급토록 함. (안 제4조의2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「동두천시 수입증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 제목 중 “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”을 “, 무인민원발급기, 주민등록관리 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 제1항 중 “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 “주민시스템”이라 한다)”를 “, 주민등록시스템(이하 “주민시스템”이라 한다)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(이하 “지방세시스템”이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의2 제2항 중 “또는 주민시스템”을 “,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 제3항 중 “또는 주민시스템”을 “,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”으로 하고, “게시판”을 “시홈페이지”로 한다.

제4조의2 제4항 중 “주민시스템”을 “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무 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·성명	세 무 과 장 박 문 달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외수입팀장 최 복 순
	담 당 자 성명·전화	김 태 형 031)860-2185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의2(수입증지, 요금계기, 무인민원발급기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의 사용) ①시장은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(이하 “계기”라고 한다), 무인민원발급기(이하 “무인발급기”라 한다) 또는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 “주민시스템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②계기,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시스템은 인영시,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. 1.~4. <생략> ③시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,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, 발행기관명, 발행장소, 계기, 고유번호,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<u>게시판</u>에 고시하여야 한다. ④주민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.	제4조의2(-----,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-----) ①----- -----, 주민등록관리시스템(이하 “주민시스템”이라 한다)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(이하 “지방세시스템”이라 한다)----- ②-----, 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----- 1.~4. <현행과 같음> ③-----, 주 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 ----- 시흥페이지----- ④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-----